

#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7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11.18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개정이유

- 안산시 민방위 교육장 시설 일부를 재난체험장으로 리모델링되어 운영되면서 기존의 공연장 기능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내용 및 사용료에 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을 『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』로 변경
- 나. 민방위교육장의 시설규정 삽입(안 제3조 제1항)
- 다. 공연장 기준의 수수료 기준을 강당의 기준에 맞추어 조정(별표)

## 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 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5. 8. 10. ~ 2015. 8. 31. (20일간)

## 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현행조례 : 붙임3
- 방침결정문 : 붙임4

< 불임 1 >

## **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”를 “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**제1조** 중 “안산시민방위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안산시 민방위교육장”으로 한다.

**제2조**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안산시 민방위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은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32에 둔다.

**제3조의 제목** “(기능)”을 “(시설의 범위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)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둈다

1. 사무실 및 강당
2. 재난체험장
3.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

**제4조제1항** 중 “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”로 한다.

**제6조** 중 “다음 각 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**제7조제1항**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**제8조제1항** 중 “경우에 한한다”를 “경우로 한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**제9조**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예외로 한다”로 한다.

**제10조** 중 “사용하는중” 을 “사용하는 중” 으로 한다.

**제11조** 중 “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” 를 “『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』” 로 한다.

**제12조**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시행에” 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안전사회지원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안전사회지원과장 손 경 수
	계장·팀장 직위·성명	민방위계장 정 양 민
	담당자 성명·전화	배 세 진 (행정 3165)

[별표]

##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(제4조 관련)

### 1. 기본시설 사용료

구 분	사용목적	기본단위	기본요액	비 고
대 강 당	교육행사등	2시간내	5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%가산</li><li>기본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 가산</li></ul>

### 2. 냉·난방사용료

구 분	기본단위	기본요액	비 고
대 강 당	1회(2시간)	50,000원	기본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가산

## < 불임 2 >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정수 조례</u>	<u>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안산시민방위교육장(이하 "교육장"이라 한다)</u> 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안산시 민방위교육장</u> ----- -----
제2조(위치) <u>교육장은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-13, 15번지에 둔다.</u>	제2조(위치) <u>안산시 민방위교육장(이하 "교육장"이라 한다)</u> 은 <u>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32에 둔다.</u>
제3조(기능) <신 설>  <u>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</u> 1. <u>민방위대원의 교육·훈련</u> 2. <u>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</u> 3. <u>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행사</u> 4. <u>기타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</u>	제3조(시설의 범위 및 기능) ① <u>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둈다</u> 1. <u>사무실 및 강당</u> 2. <u>재난체험장</u> 3. <u>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</u> ② <u>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</u> 1. <u>민방위대원의 교육·훈련</u> 2. <u>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</u> 3. <u>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행사</u> 4. <u>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</u>
제4조(교육장의 사용허가) ① <u>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 ②~④(생략)	제4조(교육장의 사용허가) ① <u>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-----</u> ----- ----- ②~④(현행과 같음)
제6조(사용허가의 제한) 시장은 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</u> 에는 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. 1.~ 3.(생략) 4. <u>기타 상업적 성격이 심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</u>	제6조(사용허가의 제한) 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</u> ----- 1.~ 3.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 -----</u> 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) ①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_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. 1. ~ 3.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또한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) ①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1. ~ 3.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사용자의 설비 등) ①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장 내·외에 특별한 설비의 추가설치를 할 수 없다. 다만,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과 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한다. ②(생략)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사용자의 설비 등) ①----- ----- ----- 경우로 한정한다. ②(현행과 같음) ③제2항에 따라 ----- ----- ---.</p>
<p>제9조(권리의 양도금지)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9조(권리의 양도금지) ----- ----- 예외로 한다.</p>
<p>제10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 사용자가 교육장을 사용하는 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 ----- 사용하는 중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준용) 교육장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<u>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</u>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1조(준용) ----- -----「<u>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</u>」 -----.</p>
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 -----.</p>

[별표]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〈별표〉〈개정 2003.07.29〉				〈별표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민방위교육장 사용료(제4조 관련)				민방위 교육장 사용료(제4조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강당 사용요금				1. 기본시설 사용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단위 : 원)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사용목적</th> <th>기본단위</th> <th>기본요액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 강당</td> <td>교육행사 등</td> <td>2시간내</td> <td>50,000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%가산</li> <li>· 기본단위 초과시는 매 시간당 기본요액의 20% 가산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구 분	사용목적	기본단위	기본요액	비 고	대 강당	교육행사 등	2시간내	5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%가산</li> <li>· 기본단위 초과시는 매 시간당 기본요액의 20% 가산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사용목적	기본단위	기본요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 강당	교육행사 등	2시간내	5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%가산</li> <li>· 기본단위 초과시는 매 시간당 기본요액의 20% 가산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부대시설 사용요금				2. 냉·난방사용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부대시설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기본단위</th> <th>기본요액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 강당</td> <td>1회(2시간)</td> <td>50,000원</td> <td>기본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가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구 분	기본단위	기본요액	비 고	대 강당	1회(2시간)	50,000원	기본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가산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본단위	기본요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 강당	1회(2시간)	50,000원	기본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가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단위 : 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시설명</th> <th>기준</th> <th>사용료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음 향</td> <td>1회</td> <td>20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음향시설</td> <td>녹음료</td> <td>1개당 (60분)</td> <td>5,000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           1. 기본요금은 1시간으로 하며 매 60분미만의 사용요금은 1시간 요금을 적용한다.            2.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.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조명시설</td> <td>부대조명</td> <td>시간당</td> <td>20,000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           3. 녹음료에는 녹음용 테이프 비용이 포함됨.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영 사</td> <td>비디오 프로젝트</td> <td>1회</td> <td>10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외 아 노</td> <td>그랜드</td> <td>1회</td> <td>20,0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시설명	기준	사용료	비 고	음 향	1회	20,000		음향시설	녹음료	1개당 (60분)	5,000				1. 기본요금은 1시간으로 하며 매 60분미만의 사용요금은 1시간 요금을 적용한다. 2.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.	조명시설	부대조명	시간당	20,000				3. 녹음료에는 녹음용 테이프 비용이 포함됨.	영 사	비디오 프로젝트	1회	10,000		외 아 노	그랜드	1회	20,000	
시설명	기준	사용료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음 향	1회	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음향시설	녹음료	1개당 (60분)	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1. 기본요금은 1시간으로 하며 매 60분미만의 사용요금은 1시간 요금을 적용한다. 2.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명시설	부대조명	시간당	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3. 녹음료에는 녹음용 테이프 비용이 포함됨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 사	비디오 프로젝트	1회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외 아 노	그랜드	1회	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냉·난방 사용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단위 : 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기본단위</th> <th>요 금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냉·난방 사용료</td> <td>2시간</td> <td>50,000</td> <td>           1. 기본요금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시 매시간 당 10,000원씩을 추가한다.            2. 매 60분미만의 사용요금은 1시간 요금으로 적용한다.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구 분	기본단위	요 금	비 고	냉·난방 사용료	2시간	50,000	1. 기본요금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시 매시간 당 10,000원씩을 추가한다. 2. 매 60분미만의 사용요금은 1시간 요금으로 적용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본단위	요 금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냉·난방 사용료	2시간	50,000	1. 기본요금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시 매시간 당 10,000원씩을 추가한다. 2. 매 60분미만의 사용요금은 1시간 요금으로 적용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